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2.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10월 30일, 임종득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0월 31일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2.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2.19.)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

제3차 국방위원회(2025.2.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수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임종득의원)

현재 위성 발사 등 국방 분야와 관련된 우주개발은 현행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이면서 동시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

구개발사업에도 해당하고, 사업의 주체에 따라 국방부 단독사업과 정부의 다부처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런데 다부처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방 분야 우주개발은 현행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절차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 절차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절차를 모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절차가 중복되거나 추진 과정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됨.

이에 다부처 우주개발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절차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 수행 절차를 따르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부처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방 분야 우주개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17조의3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류승우)

- 다부처 우주개발 사업은 「방위사업법」상 ‘방위력개선사업’이면서, 「우주개발 진흥법」상 ‘우주개발 활동’ 그리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3개 법률이 모두 적용되어 방위력개선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함에 따라 사업 심의 및 추진 절차가 중복되

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임.

- 다부처 사업 추진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절차를 따르되, 시험평가·표준화·품질보증 등 같은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절차는 「방위사업법」상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무기체계 획득에 필요한 절차는 따르도록 하여 행정비용은 줄이면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현재 방위사업청 단독으로 수행하는 우주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425 사업’ 1개이고, 다부처 연구개발사업은 방위사업청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KPS 사업’과 ‘초소형위성체계 사업’이 있음.

- 법조문 체계 및 명확성 제고 측면에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서는 다부처 우주개발의 주체로 방위사업청장 외에 ‘국방부장관’도 포함시키고 있지만,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방위사업법」의 규정을 보면, 국방부장관이 추진 주체로 규정된 업무는 국방중기계획, 사업타당성조사, 시험평가 계획수립, 방위사업 투명화(정책실명제, 청렴서약제) 등 방위력개선사업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그 외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 및 그 절차(제17조 내지 제22조)에 관한 사항은 모두 방위사업청장 단독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 점은 ‘방위력 개선사업

을 관장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을 둔다’는 「정부조직법」 제33조의 업무분장에도 부합한 것임.

따라서 ‘국방부장관’을 사업 주체에서 제외하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서는 ‘우주개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방위사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우주무기체계의 개념과 혼동을 야기할 수 있고, 우주개발은 「방위사업법」에 따라서만 추진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9호와 같이 ‘위성 등 우주무기체계’로 수정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에만 동 개정안이 적용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 제17조의3제1항에서는 ‘다부처 우주개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다부처 우주개발사업의 경우 3개의 관련 법률 중 그 적용관계를 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단독’으로 추진하는 우주개발사업의 근거가 미약해질 뿐만 아니라 적용 법률에 대한 논란이 새로 야기될 수 있음.

따라서 법 제3조의 무기체계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라 위성 등 우주무기체계도 당연히 포함되므로 개정안처럼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여 우주무기체계 방위력개선사업의 근거와 다부처 사업 적용 특례를 신설하기보다는 현행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에 제3항을 추가하여 다부처 우주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법률 적용 특례만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률안심사소위원장 부승찬)

조문 체계상 별도의 조를 신설하는 대신 현행 제17조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에 내용을 추가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원안가결

[붙임] 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2. .

제 안 자 : 국방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다부처 우주개발사업의 경우에도 방위력개선사업이므로 조문 체계상 별도의 조를 신설하는 대신 현행 제17조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에 내용을 추가하는 등으로 수정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장이 추진하는 방위력 개선사업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우주개발사업인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및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 수행 절차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또는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험평가, 표준화, 품질보증 등에 대하여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안 제17조의3을 삭제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 의 추진방법 등) ①· ② (생략) <u><신설></u>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 의 추진방법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도 불구하고 방위사 업청장이 추진하는 방위력개선사업이 다 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수행 하는 우주개발사업인 경우에는 「국가연구 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및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 주개발 수행 절차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또는 「우 주개발 진흥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험 평가, 표준화, 품질보 증 등에 대하여는 방 위력개선사업의 절차

③ (생 략)		에 관한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 음)
<신 설>	제17조의3(다부처 우주 개발의 추진) ① 국 방부장관 및 방위사 업청장은 다른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공 동으로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 주개발(이하 “다부처 우주개발”이라 한다) 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다부처 우주개발 은 제17조에도 불구 하고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에 따른 국 가연구개발사업의 절 차 및 「우주개발 진 흥법」에 따른 우주 개발 수행 절차에 따 라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또는 「우 주개발 진흥법」에서	<삭 제>

	<u>정하지 아니한 시험</u> <u>평가, 표준화, 품질보</u> <u>증 등에 대하여는 방</u> <u>위력개선사업의 절차</u> <u>에 관한 규정을 적용</u> <u>할 수 있다.</u>	
--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장이 추진하는 방위력 개선사업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우주개발사업인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및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 수행 절차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또는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험평가, 표준화, 품질보증 등에 대하여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주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추진 중인 우주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 법 등) ①·② (생 략) <u><신 설></u>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 법 등) ①·② (<u>현행과 같음</u>)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장이 추진하는 방위력개선사업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우주개발사업인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 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및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 른 우주개발 수행 절차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연구개발혁신법」 또는 「우주 개발 진흥법」에서 정하지 아 니한 시험평가, 표준화, 품질보 증 등에 대하여는 방위력개선 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 용할 수 있다.
<u>③ (생 략)</u>	<u>④ (현행 제3항과 같음)</u>